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155
----------	------

2002. 5. 8

1. 제안이유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 개정으로 우리시 의원 정수가 1인이 늘어남에 따라
- 상임위원회를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1개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중 “의회운영위원회 12인 이내, 행정경제위원회 13인 이내, 사회복지위원회 13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3인 이내”를 “의회운영위원회 8인 이내, 자치행정위원회 10인 이내, 경제환경위원회 10인 이내, 사회복지위원회 10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10인 이내”로 하고,
- 동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함.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경기도 시군구 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이 개정됨에 따라
-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 중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개정은 시기적절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 동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8인”의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12인”으로 위원 정수를 4인 더 늘려서 동 조례를 수정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의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변 호	1156
------------	------

2002. 5. 8

1. 제안사유

- 인구 6천 이상의 동은 별도의 선거구를 갖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과 경기도시군구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 우리시 의원 정수가 1인이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1개 상임위원회를 더 설치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성남시의회공인조례 제2조(종류) 중 “성남시의회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을 “성남시의회 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함.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경기도 시군구 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이 개정됨에 따라
-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고 필요 조치로 사료됩니다.